

#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50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1. 08. 정영환 의원  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11. 14.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11. 27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희태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2)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3)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4) 예방교육과 홍보 및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- 5)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청소년보호법」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49호
  - 예고기간: 2024. 11. 8. ~ 2024. 11. 13.(5일간)
 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장혜정)

-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  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 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    -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  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    - 청소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음.
  -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4조~제5조)
    -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.
  - 예방교육, 홍보, 자문 등(안 제6조~제7조)
    -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, 전문가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  -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~제9조)
    -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  
-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최근 여성가족부와 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40.1%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대상이며, 청소년 마약 사범이 1천 명대로 올라서는 등 알코올, 마약, 인터넷, 도박 등 주요 4대 중독에 대한 노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.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11. 2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